#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(이상민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8533

발의연월일: 2021. 3. 4.

발 의 자:이상민·고용진·기동민

김경협 · 김교흥 · 김영호

박성준 · 송재호 · 안규백

어기구 · 장철민 · 정춘숙

홍성국 · 홍익표 · 홍정민

황운하 의원(16인)

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정보나 재난관리정보는 여러 기관들이 생산한 재난 및 안전관리 관련 정보의 공동이용과 유통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음. 따라서 재난의 예측, 실시간 대응 등을 위해 ICT 기술이나 빅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.

이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재난안전데이터를 수집·분석하여 활용하고, 이를 위하여 데이터의 표준화, 재난안전데이터센터 설립 또는 지정 등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재난안전데이터를 재난의 예측, 실시간 대응 등에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(안 제3조 및 제25조의2, 안제70조제6항 및 제74조의4 신설).

##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에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13. "재난안전데이터"란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센서, 모니터링 기기 등으로 수집하거나 분석·연구개발 등을 통해 산출하여 광
  - (光)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된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.

제25조의2제1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2의2. 재난안전데이터의 수집, 관리 및 제공

제70조제6항을 제7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⑥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른 재난백서 및 관련 자료를 제74조의4제4항에 따른 재난안전데이터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. 제74조의4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- 제74조의4(재난안전데이터의 수집 및 활용)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의 예측, 실시간 대응, 또는 산업적 활용 등을 위하여 재난안전데이터를 수집·분석하여 활용할 수 있다.
  -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안전데이터의 수집·분석 및 활용 등을 위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해당 기관이 수집·관리하는 재

난안전데이터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.

-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안전데이터의 원활한 제공 및 효율적인수집·분석 및 활용 등을 위하여 재난안전데이터의 표준을 정하여고시하고,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그 표준을 사용하도록 권고할수 있다. 이 경우 해당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.
-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안전데이터의 수집·분석 및 활용 등에 필요한 업무와 연구개발을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난안전데이터센터를 설립하거나 지정할 수 있다.

### 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 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	제3조(정의)
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	
1. ~ 12. (생 략)	1. ~ 12. (현행과 같음)
<u>&lt;신 설&gt;</u>	13. "재난안전데이터"란 재난
	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센서,
	모니터링 기기 등으로 수집하
	거나 분석・연구개발 등을 통
	해 산출하여 광(光) 또는 전
	<u>자적 방식으로 처리된 자료</u>
	또는 정보를 말한다.
제25조의2(재난관리책임기관의	제25조의2(재난관리책임기관의
장의 재난예방조치 등) ① 재	장의 재난예방조치 등) ①
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소관	
관리대상 업무의 분야에서 재	
난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	
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	
여야 한다.	<u>.</u>
1. • 2. (생략)	1. • 2. (현행과 같음)
<u> &lt;신 설&gt;</u>	2의2. 재난안전데이터의 수집,
	<u>관리 및 제공</u>
3. ~ 8. (생략)	3. ~ 8. (현행과 같음)
② ~ ⑦ (생 략)	② ~ ⑦ (현행과 같음)
제70조(재난상황의 기록 관리) ①	제70조(재난상황의 기록 관리) ①
~ ⑤ (생 략)	~ ⑤ (현행과 같음)

<신 설>

<u>⑥</u> (생 략) <신 설>

- ⑥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른 재난백서 및 관련 자료를 제74조의4제4항에 따른 재난안전데이터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.
- ⑦ (현행 제6항과 같음)
- 제74조의4(재난안전데이터의 수 집 및 활용) ① 행정안전부장 관은 재난의 예측, 실시간 대 응, 또는 산업적 활용 등을 위 하여 재난안전데이터를 수집・ 분석하여 활용할 수 있다.
  -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안전 데이터의 수집·분석 및 활용 등을 위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 의 장에게 해당 기관이 수집· 관리하는 재난안전데이터의 제 공을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 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.
  -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안전 데이터의 원활한 제공 및 효율 적인 수집·분석 및 활용 등을 위하여 재난안전데이터의 표준 을 정하여 고시하고, 재난관리

책임기관의 장에게 그 표준을 사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. 이 경우 해당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 야 한다.

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안전데이터의 수집·분석 및 활용등에 필요한 업무와 연구개발을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난안전데이터센터를 설립하거나 지정할 수 있다.